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공 유 수 면 관 리 및 매 립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위반 시 과태료 부과범위를 세분화 하는 법률 개정(20.1.29개정, 7.30시행)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을 시행령에 반영(안 제75조 관련 별표3)하고 공유수면 매립 위임업무 중 다소 모호하게 명시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(안 제75조 관련 별표3)

- 개정 법률상 최대 한도액인 500, 300, 200백만원으로 설정된 각 한도액 그룹별 세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의 ‘과태료 금액지침(’19.2)’에 따라 조정

*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(2019.2.2, 국무회의 보고)에 따라 유사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설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(’20.1).

- (기존) 500만원 이하 → (개정)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0·300·200만원 이하로 세분화

나.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업무 중 “매립지 원상회복 명령 등“을 위임
업무 조문에 명시하여 위임업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(안
제74조 제1항 제19호 :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별첨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제19호 중 “면제”를 “면제, 원상회복 명령,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”로 한다.

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5조 관련)의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·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호	220만원
나.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2호	500만원
다.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3호	220만원
라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6조제2항제1호	170만원
마.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·일시사	법 제66조제2항제2호	170만원

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·제거를 거부·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
바.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 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입 ·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우	법 제66조제2항제3호	210만원
사. 법 제9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사 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3항제1호	100만원
아.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·의 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3항제2호	100만원
자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 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3항제3호	100만원
차.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3항제4호	160만원
카.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 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 지를 훼손한 경우	법 제66조제3항제5호	100만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4조(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「항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,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74조(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8. (생략)	1. ~ 18. (현행과 같음)
19. 법 제5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, 시설 그 밖의 물건의 국가 귀속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조치	19. ----- --- 면제, 원상회복 명령,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----- -----
20. ~ 23. (생략)	20. ~ 23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*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5조 관련) 개정 내용은 붙임1(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령안) 참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66